

# 안산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2457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3.11.15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## 제안이유

-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·점검 결과 및 행정처분 내용 등의 정보를 인터넷 또는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대상이 일부 환경관련 법규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개의 대상을 확대 추가 하고자 함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,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을 구성하여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.

## 주요내용

-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의 대상 확대 추가(안 제2조)
- 쉬운 용어 등으로 조문 정비

## 개정조례안 : 불임

## 신·구조문대비표 : 불임

## 관계법령발췌서 : 불임

- 「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·점검규정」

##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##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## 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13. 10. 15. ~ 2013. 11. 04.

## 기타 참고사항

- 현행 「안산시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」

# 안산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시장은 제2항 각호의 1에” 를 “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공개의 대상이 되는 업종 및 업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

1.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, 별표 13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사업, 별표 16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(VOC)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
2. 「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1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
3.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4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이 설치된 사업장
4. 「하수도법」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련시설 또는 사업장(이하 “오수처리시설 등 “ 이라 한다)
  - 가.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(오수처리시설, 정화조)
  - 나.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분뇨의 재활용 신고를 한 자
  - 다.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·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
  - 라.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계·시공업을 등록한 자
  - 마.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을 등록한 자
  - 바.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
5.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시설 또는 사업장(가축분뇨처리시설 등)
  - 가.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과 법 제12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
  - 나.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
  - 다.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한 자
  - 라.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 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
  - 마.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·시공업을 등록한 자

6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하는 사업장 및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중 영업대상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 자, 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,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자
7. 「유해화학물질 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독물관련 영업자
  - 가.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독물영업자
  - 나.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취급제한물질영업자
  - 다.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취급금지물질영업자
  - 라. 법 제24조에 따른 유독물을 제조, 수입, 판매, 보관, 저장·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
  - 마.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“유독물의 관리기준” 적용사업장
8. 「악취방지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및 신고대상시설 외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
9. 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(재활용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하는 사업장 및 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
10. 「잔류성 유기오염물 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1에 따른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
11.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업소 중 허가(신고)를 받지(하지) 아니한 업소

제3조 중 “제2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2조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4조 중 “제2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2조에 따른”으로 하고,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5조 중 “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3조에 따라”로 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환경정책과
입 안	실·과장 직위·성명	환경정책과장 임 흥 선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수질보전담당 최 미 연
자	담 당 자 성명·전화	정미진 (행정 2245)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	개	정	안
<p>제2조 (공개 대상) ① <u>시장은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소가 환경관련법규를 위반한 때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내용 등을 공개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공개 대상이 되는 업종 및 업소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u></p> <p>1. <u>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별표3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</u></p> <p>2. <u>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별표3에서 정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</u></p> <p>3. <u>「악취방지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</u></p> <p>4. <u>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업소중 허가(신고)를 받지(하지) 아니한 업소</u></p>	<p>제2조 (공개 대상) ① <u>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-----</u> ----- -----.</p> <p>② <u>공개 대상이 되는 업종 및 업소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u></p> <p>1.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, 별표 13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사업, 별표 16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(VOC)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</p> <p>2. 「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1에 따른 소음·진동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</p> <p>3.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4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이 설치된 사업장</p> <p>4. 「하수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련시설 또는 사업장(이하 “오수처리시설 등”이라 한다)</p> <p>가.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(오수처리시설, 정화조)</p>		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 정 안
		<p>나.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분뇨의 재활용 신고를 한 자</p> <p>다.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·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</p> <p>라.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계·시공업을 등록한 자</p> <p>마.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을 등록한 자</p> <p>바.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</p> <p>5.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시설 또는 사업장(가축분뇨처리시설 등)</p> <p>가.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과 법 제12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</p> <p>나.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</p> <p>다.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재활용신고를 한 자</p> <p>라.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</p> <p>마.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·시공업을 등록한 자</p>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	<p>6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하는 사업장 및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중 영업대상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 자, 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,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자</p> <p>7. 「유해화학물질 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독물관련 영업자</p> <p>가.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독물영업자</p> <p>나.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취급제한물질영업자</p> <p>다.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취급금지물질영업자</p> <p>라. 법 제24조에 따른 유독물을 제조, 수입, 판매, 보관, 저장·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</p> <p>마.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“유독물의 관리기준” 적용사업장</p> <p>8. 「악취방지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및 신고대상시설 외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</p>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3조 (공개방법)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를 인터넷·일간신문·반상회보·시보 등에 공개할 수 있다.</p> <p>제4조 (사전통지)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을 당해 업소의 대표자·환경관리인 등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.</p> <p>제5조 (공개사항의 삭제)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에 공개한 사항을 공개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.</p>	<p>9. 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(재활용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하는 사업장 및 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</p> <p>10. 「잔류성 유기오염물 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1에 따른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</p> <p>11.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업소 중 허가(신고)를 받지(하지) 아니한 업소</p> <p>제3조 (공개방법) 시장은 제2조에 따른 ----- -----</p> <p>제4조 (사전통지) 시장은 제2조에 따른 ----- ----- 해당 ----- ----- -----</p> <p>제5조 (공개사항의 삭제) 시장은 제3조에 따라 ----- ----- -----</p>